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17

발의연월일: 2020. 9. 3.

발 의 자: 강득구·이소영·박성준

윤미향 • 윤재갑 • 고영인

오영환 • 이상직 • 김승원

송재호 · 강민정 · 장경태

김영호 · 이광재 · 양정숙

권칠승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

화하며,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의무를 명시함(안 제3조 및 제5조).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함 (안 제7조).
- 다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평가하고 이를 비용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12조의2 신설).
- 라.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,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함(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"존중하고"를 "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며, 존중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"을 "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"으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대한 사회적"을 "대한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, 사회적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심의"를 "심의·조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지원위원회의"를 "그 밖에 지원위원회의"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(互選)한다.

-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 원
-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- 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-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2조의2(지원센터의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 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 -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

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 지사항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 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청 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	무) ①
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	
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	
밖 청소년을 <u>존중하고</u> 이해할	<u>학</u> 대와 폭력 등 <u>으</u>
수 있도록 조사・연구・교육	로부터 보호하며, 존중 및
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	
여야 한다.	
	<u>.</u>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학</u>	② <u>학</u>
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	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
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	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・제도
<u>을 수립·시행</u> 하여야 한다.	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
<u><신 설>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
	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
	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
	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
	<u>다</u> 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제1</u>	<u>④</u> <u>利1</u>
<u>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책무를 다	<u>항부터 제3항까지</u>
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	
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	

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에
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
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학교 박 청소년에 <u>대한 사회</u>
 <u>적</u>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
 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- 2. ~ 7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)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 설>

<u>.</u>
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
①
1대한 학대
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, 사
<u>회적</u>
2. ~ 7. (현행과 같음)
2. ~ 1. (연행과 끝름)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
회) ①
심
<u>의·조정</u>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
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
호선(互選)한다.

<신 설>

③ 지원위원회의 조직 ·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① ~ ③ (생 략)
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- ⑤ (생략) <신 설>

-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 급 공무원
-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
-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-----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- ⑤ (현행과 같음)
- 제12조의2(지원센터의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 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원센터에의 연계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 다.
- 제15조(지원센터에의 연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 -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

	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의를
	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
	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